
2025년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제품 판로지원 지원사업 공고 안내서

2025. 4. 11.



목 차

I. 프로그램 개요	1
1.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1
2.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2
3. 추진일정	3
II. 프로그램 세부내용	4
1. 지원사항 및 지원유형	4
2. 수행기관 선정절차	6
3. 프로그램 운영사항	7
III. 신청서 제출안내	9
1. 프로그램 신청방법	9
2. 프로그램 유의사항	10
3. 문의처	10
붙임자료 1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11
붙임자료 2 : 신산업 창업 분야	12

I. 프로그램 개요

1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 추진목적

- 우수한 실증 제품 및 서비스가 매출(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조달 진입(혁신제품 지정), 공공구매 상담회 및 시범도입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 지원

□ 프로그램명: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제품 판로지원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 '25. 11. 30. (약 7개월)

□ 지원내용(2Track)

- Track1: (혁신제품 지정지원)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 제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Track2: (실증제품 판로지원) 혁신제품 지정 또는 혁신장터 등록 완료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요기관이 시범구매, 혁신조달 하도록 제반 사항 지원

혁신제품 지정부터 판로 개척까지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제품 판로지원 사업공고

모집기간
2025. 04. 11. ~ 05. 02.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
(신산업 창업 분야일 경우 10년 이내)

지원내용(2Track)

- Track1 : (혁신제품 지정지원)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Track2 : (실증제품 판로지원) 수요처 확보 제반 사항 지원(공공구매 상담회, 홍보물 제작 등)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 032-228-1204 ✉ kmj@it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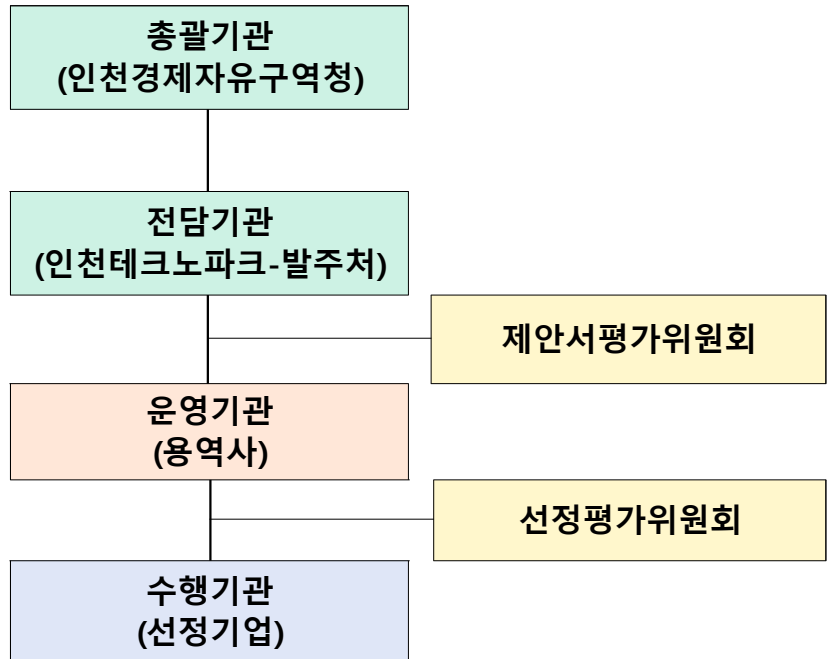
신청방법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신청
www.startuppark.kr

STARTUP PARK INCHEON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TP INCHEON TECHNO PARK

2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기획 및 추진방침 수립 ○ 사업내용, 범위 확정 및 예산확보 ○ 전담기관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 점검 등
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스타트업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총괄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관의 과업 목적, 평가 취지 설명 등 브리핑 참가 ○ 과업목표 달성 방안, 위험관리 능력 등 역량 검증 관련 질의응답 ○ 발주처에 가장 유리한 제안을 한 운영기관 평가·선정
운영기관 (용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모집, 컨설팅 제공 등 협상 기술서 기반 과업 이행 등 ○ 실증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수요기관 확보 및 협의체 발족 지원 ○ 성과품 제출을 포함한 전담기관이 요청한 증빙자료 등 제출
선정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의 과업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브리핑 참가 ○ 수행기관 제출자료 및 역량 검증을 위한 질의응답 ○ 공장보유 등 혁신(시)제품 지정 가능성 높은 기업 평가·선정
수행기관 (선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시)제품 지정·등록을 위한 컨설팅 이수 등 프로그램 참가 ○ 공공기관 판로지원 행사 참가 및 시범 구매 상담 ○ 기타 총괄·전담·운영기관 요청 문서작성 및 제출 등

3

추진일정

모집공고	4월 2주 ~ 5월 1주 (약 3주)	[인천테크노파크] · 온라인 접수(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 지원사업 탭)
↓		
서류심사	5월 2주차	[인천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여부 검토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검토(타기관 공문 발송)
↓		
선정평가	5월 3주차	[인천테크노파크] ↔ 평가위원회 ·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등 사업내용 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진행
↓		
선정결과 통보	5월 3주차	[인천테크노파크] ↔ 수행기관 · 평가결과 및 선정기업 대상 선정 안내
↓		
사전(현장)점검	5월 3주 ~ 5주	[인천테크노파크] ↔ 수행기관 · 수행기관 현장방문 및 기업 사전진단 진행
↓		
전문가 컨설팅 (지정지원)	5월 중 ~ 11월 말	[인천테크노파크] ↔ 수행기관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업별 5회 이상)
↓		
공공구매 상담회 (판로지원)	6월 중	[인천테크노파크] ↔ 수행기관 · 공공 수요처 매칭을 통한 구매상담회 운영 ※하반기 공공구매 상담회는 별도 공고 추진 예정
↓		
만족도 조사 및 성과 조사	12월 중	[인천테크노파크] ↔ 수행기관 · 만족도 조사 및 참가기업 성과 분석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지원사항 및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실증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매출(상용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
 - ※ 인천기업(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 포함) 70% 이상 선정(관외 30% 미만), 관외 기업의 경우 사업 종료 전까지 인천으로 사업장(본점, 연구소, 공장, 지점)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신청)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공공구매 상담회(수요처 매칭), 시범도입 지원 등 수요처 확보 제반 사항 지원

□ 지원유형(2Track)

구분	세부내용
혁신제품 지정지원 (5개사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1개사당 5회 이상) - 기업진단 및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전 단계 지원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re> graph LR A[기업진단 (제품분석)] --> B[혁신제품 지정 로드맵 수립] B --> C[목표 구체화 (신청부처)] C --> D[방해요인 정의 및 제거 (인증 등)] D --> E[목표달성 (신청서 제출)] </pre> </div>
실증제품 판로지원 (10개사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한 판로지원(상반기 1회) - 공공기관 초청 공공구매 상담회 또는 찾아가는 공공구매 상담회 등 · 홍보물 제작 지원 - 공공구매 상담회(수요처 매칭) 진행 시 참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지원

□ 지원요건

- (지정지원) 국내 특허를 등록했거나 출원한 기업 또는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가능한 기업
- (판로지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보유하고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시스템, SW, 장비 등)가 TRL 7단계 이상인 기업
 - * TRL(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사업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 수행을 불이행하거나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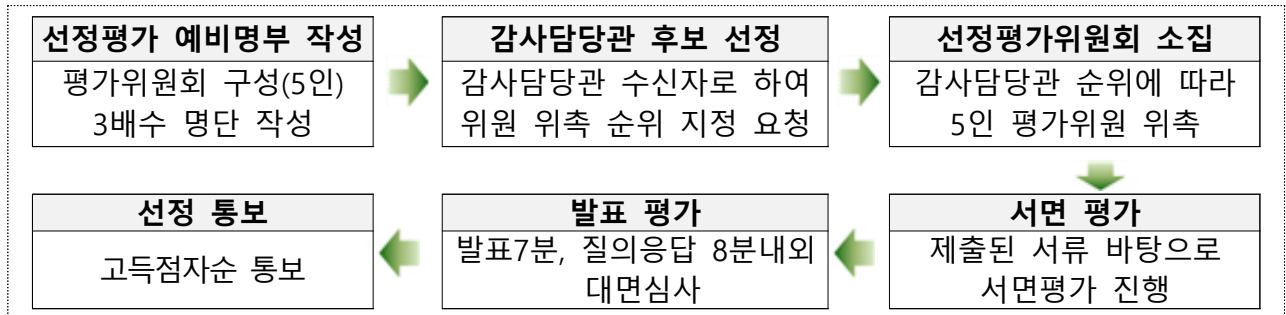
구분	사전지원 제외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2

수행기관 선정절차

□ 평가절차

- 신청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선정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상황에 따라 서면, 발표평가 중 한 가지 절차 생략될 수 있음

□ 적합성(사전) 검토

- (검토대상) 접수 '완료'된 참가기업
- (검토방법) 참가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중복 지원 여부 조사 등을 통한 적합성 검토
- (검토위원) 인천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된 참가기업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 (80점)	①공공성	○ 공공의 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20
	②혁신성	○ 기존 기술 또는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별성, 성능 향상, 새로운 접근 방식 등을 포함한 혁신 기술 또는 개량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20
	③시장성	○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 ○ 공공기관 등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 시장 혁신 예상	20
	④참여의지 및 적극성	○ 혁신제품 지정 및 등록을 위한 컨설팅, 공공구매 지원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 참여 의지	20
정량적 평가 (20점)	①지식재산권	○ 특허 등록 완료(10점), 특허 출원(5점), 실용신안/디자인 등 기타 지식재산권(2점)	10
	②지역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소재 본점(10점), 공장 또는 연구소(8점), 지점(6점), 그 외(5점)	10
합계			100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반 올림한 값을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

□ 사전(현장)점검 및 진단

- (추진목적) 선정기업의 실증제품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전진단 진행
- (추진시기) '25. 5. 중
- (지원대상) 선정기업 15개사
- (주요내용) 지원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보유한 핵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BM)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제품 판로개척 경로 설정

□ 혁신제품 지정지원 컨설팅

- (추진목적)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기업당 5회 이상)
- (추진시기) '25. 5. 중 ~ 11. 말
- (지원대상) 혁신제품 지정지원 5개사
- (주요내용)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

□ 공공구매 상담회 운영

- (추진목적) 실증 제품 및 서비스가 매출(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상담회 운영
- (추진시기) '25. 상반기(1회)
- (지원대상) 실증제품 판로지원 10개사
- (주요내용) 공공기관 초청 공공구매 상담회 또는 찾아가는 공공구매 상담회 운영을 통한 수요처 확보

※ 하반기 공공구매 상담회는 별도 공고를 통해 추진 예정이며, 상반기에 참가한 기업은 하반기 상담회에도 연계하여 참가 가능

□ 홍보물 제작 지원

- (추진목적) 공공구매 상담회 진행 시 참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지원
- (추진시기) '25. 05. 중 ~ '25. 11. 말
- (지원대상) 실증제품 판로지원 10개사
- (주요내용)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물 제작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인식 제고 및 홍보 효과 극대화

□ 공공구매 상담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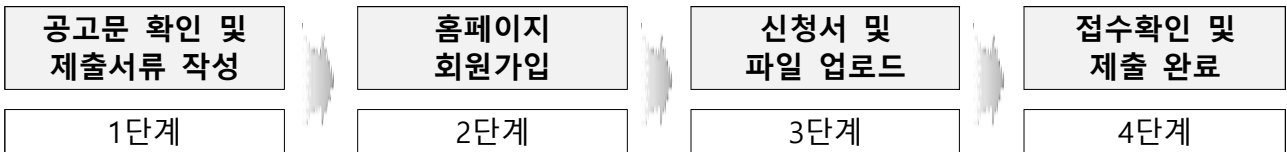
구 분	사 례	비 고
인천경제청	<p>명칭: 2024 불업페스티벌 쇼케이스(공공구매 상담회) 날짜: 2024 9. 27. 장소: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 I 지하1층 규모: 참가기업 9개사, 기업당 5개 공공기관 및 투자사 매칭 내용: 기관 담당자-기업 1:1 상담회, 혁신제품 공공 구매 설명회&파트너쉽데이 등 ※인천경제청 주최, 인천스타트업파크 주관 (2024 실증제품 시범구매 사업 일환으로 추진)</p>	
인천시	<p>명칭: 2025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매칭데이 날짜: 2025. 2. 10. 장소: 인천시 서구청 대회의실 규모: 참가기업 24개사, 지자체·공공기관 등 500명 내용: 구매·계약 담당자-기업 1:1 상담회, 제품 체험 행사, 홍보 및 판매 등 부대행사 ※인천시 서구청 주최</p>	
인천관광공사	<p>명칭: 2024 그린에너지엑(공공구매 상담회) 날짜: 2024. 10. 30. ~ 11. 1. / 3일간 장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4홀 규모: 참가기업 39개사, 지자체·공공기관 22개 내용: 구매·계약 담당자-기업 1:1 상담회, B2B 상담회 등 ※공동(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 주최</p>	
인천환경공단	<p>명칭: 2024 제8회 공공구매 상담회 날짜: 2024. 5. 21. 장소: 인천환경공단 대회의실 규모: 기업48개사(창업11, 중소기업37), 공단관계자 44명 내용: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와 현황, 공공구매 확대 방안, 사회적경제 제품기획전 행사 ※공동(인천지방중기청/인천환경공단) 주최</p>	

Ⅲ. 신청서 제출안내

1 프로그램 신청방법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안내

- (접수기간) '25. 4. 11.(금) ~ '25. 5. 2.(금) 17:00까지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 www.startuppark.kr)



※제출 서류는 폴더 1개에 담아 100MB 압축파일(zip) 1개로 업로드

- 사업 신청은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 온라인신청 및 입력 안내는 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www.startuppark.kr) 공지사항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0.회원가입 3.지원사업 내용 참고)
- ❶ 누리집(<http://startuppark.kr>)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 제출(100mb 이내 .zip파일)
- ❷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 접수요망
- ❸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

연번	서 식 명	형 태	양식	비고
1	실증제품 판로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한글	서식 1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PDF	서식 2	필수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PDF	서식 3	필수
4	사업장 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PDF	서식 4	필수
5	발표자료 *대용량일 경우에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	PPT	자유양식	필수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PDF	-	필수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신생기업 당해연도 세무법인 발행본) 1부	PDF	-	필수
8	국내 특허등록증 또는 특허출원증 - 지식식재산권(실용신안), 시험성적서 등 혁신제품 지정 신청 가능한 자료	PDF	-	필수
9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그 외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결과서, 실물사진, 기술개발 결과서 등)	PDF	-	실증제품 판로지원 신청시

2

프로그램 유의사항

□ 프로그램 수행 및 관리

- 사업 종료 시 수행 결과보고서, 전담기관 요청자료 등 제출
- 전담기관에서 현장실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수행기관은 진행현황 보고서, 기타 요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참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제공받은 또는 수집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파기·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공모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프로그램 종료 후 전담기관에서 추진하는 성과 및 실적조사(매출, 고용, 투자, 지재권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
- 프로그램 종료 연도부터 3년간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담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 ※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프로그램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포기 시 추후 전담기관 및 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참여제재 가능함

3

문의처

사업담당 부서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 실증제품 판로지원 지원사업 담당 - 강미정 대리 ☎032)228-1204, kmj@itp.or.kr

붙임자료 ①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 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럿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붙임자료 ② 신산업 창업 분야

법 령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30.[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 1. 30,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 | | |
|---|------------------|
| ① | 인공지능 |
| ② | 빅데이터 |
| ③ | 5G+ |
| ④ | 블록체인 |
| ⑤ | 서비스플랫폼 |
| ⑥ | 실감형콘텐츠 |
| ⑦ | 지능형 로봇 |
| ⑧ | 스마트제조 |
| ⑨ | 시스템반도체 |
| ⑩ | 자율주행차 |
| ⑪ | 전기수소차 |
| ⑫ | 바이오 |
| ⑬ | 의료기기 |
| ⑭ | 기능성 식품 |
| ⑮ | 드론·개인이동수단 |
| ⑯ | 미래형 선박 |
| ⑰ | 재난/안전 |
| ⑱ | 스마트시티 |
| ⑲ | 스마트홈 |
| ⑳ | 신재생에너지 |
| ㉑ | 이차전지 |
| ㉒ |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 ㉓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